

#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7월 13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 □ 제안이유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부개정(2004. 1. 29, 법률 제715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업무담당 과장과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 시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고, 3년의 기간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보육시설의 설치, 교사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을 보조하도록 함.  
(안 제12조)
- 시장은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도·명령을 하고,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조사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에서 세 자녀를 둔 가정을 포함시켰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p> <p>○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이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p> <p>○ 위원중에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담당국장으로 하는 것은 낮지 않은지?</p>	<p>○ 포함시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보육시설 이용 관련 상부방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p> <p>○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기구로서 보육위원회 보다 기능이 보장되었고 지역과의 연계한 조직강화의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p> <p>○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담당과장이 들어가는 낫다고 보며 조례관련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된 사항입니다.</p>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1호
의결 년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출년월일 : 2005. 7. 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부개정(2004. 1. 29, 법률 제 715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위원회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업무담당과장과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시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고, 3년의 기간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아. 보육시설의 설치, 교사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2조)
- 자. 시장은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도·명령을 하고,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조사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첨부 :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보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이하 “시”라 한다)에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  
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3.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중 3인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과반수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 자체평가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는 다음과 같다.

1.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영유아
3.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제12조(비용의 보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3조(지도 및 명령)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와 검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위탁만료일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4. 01. 08 조례 제1273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7호

개정 1999. 02. 18 조례 제16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 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과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되,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 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중 3인은 부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회의와 역할등) ①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회의가 성립된다.

②간사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4. 1. 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은 이 조례 공포후 3개월내에 재약

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 11. 1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0 조례 제1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999. 2. 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